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2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으로 운영하고자 함.
-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기능, 조직 및 인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비한 일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임원 및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개정취지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내 보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안함.
- 경상북도에는 독립운동기념관(안동), 항일의병기념공원(청송), 통일전(경주), 다부동전적기념관(칠곡) 등 보훈시설이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 각각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2023년부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항일의병기념공원과 통일전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보훈시설의 통합관리를 준비하여 온 것으로 파악됨. 이외에도 경상북도에는 시군에 14개의 보훈시설(기념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붙임자료 참조).
- 따라서, 3국 통일의 위업 달성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 및 국권 회복을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의 열을 기리고, 6.25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로써 대한민국을 지킨

수많은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는 보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으로 확대하여 통합재단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으로 하며,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존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으로 확대하여 통합재단으로 설립·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2조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¹⁾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함에 따라, 재단법인은 법인의 설립과 허가(법인종류)에 해당함으로 명칭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의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 ② (개정안과 같음)

- 안 제3조는 보훈재단의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사업과 호국정신을 기르는 사업들을 적절하게 규정하여 호국보훈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재단의 정관의 내용을 규정한 것임. 다만, 「민법」 제40조²⁾ 및 제43조³⁾에서 자산과 이사의 임면은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자산과 이사의 임면 사항은 근거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3)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u>이사회</u>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7. 조직 8. <u>자본금 및 회계</u>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개정안 같음) 5. <u>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u> 6.~7. (개정안 같음) 8. <u>자산과 자본금 및 회계</u> 9.~11. (개정안 같음) ② (개정안 같음)

○ 안 제5조는 재단의 재산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경북도,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재단 사업 관련 기관 단체의 등의 출연재단 및 사업수입금으로 규정한 것임. 다만,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규정하는 바, 기본재산인 재산의 구성에 보조금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안 제12조에 운영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재산의 구성에서

보조금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⁴⁾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u>출연금 및 보조금</u> 2. 재단 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의 출연재산 3. 그 밖에 사업수입금 등	제5조(재산의 조성) (개정안 같음) 1. ----- <u>출연금</u> 2.~3. (개정안 같음)

- 안 제6조는 호국보훈재단의 임원, 안 제7조는 임원의 직무, 안 제8조는 이사회, 안 제9조는 재단의 직원을 규정한 것임.
- 다만, 안 제8조제3항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단의 사업의 심의·의결은 안 제6조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하의 이사의 고유역할임을 감안하며, 재석이사과 출석이사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8.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② (개정안 같음) ③ -----재석이사----- 출석이사-----. ④ (개정안 같음)

- 안 제10조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출연금 교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교부) ----- -----예산의 범위에 선-----.

- 안 제11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재단의 운영재원, 안 제13조는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안 제1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를 규정하여 호국보훈재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다만, 안 제14조의 공유재산의 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위탁, 사용허가, 대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관리위탁, 사용허가, 대부를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u>대부할 수 있다.</u>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 ----- ----- <u>관리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u>

○ 안 제15조는 보훈재단의 사업계획 및 결산, 안 제16조는 보훈재단 업무에 대한 확인·검사, 안 제17조는 공무원의 파견, 안 제18조는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안 제16조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재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규정하는 것이 의미의 전달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8조의 준용 규정은 선행 조문 안 제 2조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준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확인·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보훈재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u>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검사 등) ① ----- ----- ----- -재단----- --- <u>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②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삭 제>

- 부칙의 경과조치는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인용, 행위,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인용, 행위, 임·직원으로 규정함으로서 통합재단 출범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 조례의 목적과 내용은 모두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주요내용 검토내용과 같이 일부 조문은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호국보훈재단의 효과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성 있는 호국보훈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확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호국보훈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보훈사업을 1차적으로 국가의 고유사업에 해당함. 물론, 경상북도에서 특색 있게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보훈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사업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 보훈재단 운영에 따른 경상북도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리고, 경상북도는 통합하는 4개의 보훈시설 이외에도 14개의 보훈시설(기념관 등)이 시군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음.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 출범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보훈시설(기념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년 4월 24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1. 수정 이유

가. 재단법인과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적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

2. 주요 내용

가. 재단의 명칭을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이사의 임면과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다. 재단의 재산에서 보조금을 제외함(안 제5조)

라. 이사회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6. 수정안 본문 : 붙임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이사회 운영”을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본금”을 “자산과 자본금”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출연금 및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적인원”을 “재적이사”로, “출석인원”을 “출석이사”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대부”를 “공유재산의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부할 수 있다”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훈재단”을 “재단”으로, “확인·검사할 수 있다”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 -----.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정관) ① ----- ----- -----.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u>이사회</u> 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u>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u> -----
6.·7. (생략)	6.·7. (개정안과 같음)
8. <u>자본금</u>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u>자산과 자본금</u> -----
9. ~ 11. (생략)	9. ~ 11.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 ----- -----.
1.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u>출연금</u> 및 <u>보조금</u>	1. ----- ----- <u>출연금</u>
2.·3. (생략)	2.·3.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이사회) ①·② (생략)	제8조(이사회) ①·② (개정안과

③ 이사회는 <u>재적인원</u> 과반수의 출석과 <u>출석인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10조(출연금 교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u>대부</u>할 수 있다. 제16조(확인·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보훈재단의</u>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u>확인·검사</u>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같음) ③ ----- <u>재적이사</u> ----- ----- <u>출석이사</u>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출연금 교부) ----- ----- -----<u>예산의 범위</u> <u>에서</u>----- -----. 제14조(<u>공유재산의 대부 등</u>) ----- ----- ----- ----- <u>관리</u> <u>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u>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검사 등) ① ----- ----- ----- ----- <u>재단</u>----- ----- <u>확인·검사</u>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삭 제>
---	---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시

나.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다. 독립운동정신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시설의 관리

2.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사업

3.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6.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출연금

2. 재단 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의 출연재산

3. 그 밖에 사업수입금 등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및 그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출연금 교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도,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
3. 그 밖에 사업수익금 등

제13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

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종전의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행위와 그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참고

도내 기념관 현황(23. 12월말)

구분	명칭	주제분류	지역	시설 소유자	시설 관리자	건립 시기
독립 운동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기타	안동시	경상북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07.08.10.
	대전 3.1의거 기념관	3·1운동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2001.11.28.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기타	울릉군	국가보훈처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2017.10.27.
	박열의사기념관	의열투쟁	문경시	문경시	(사)박열의사기념사업회	2012.10.01.
	심산 기념관	문화운동	성주군	성주군수	성주군수	1974.08.15.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의병운동	구미시	구미시	왕산기념사업회	2009.09.28.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관	의병운동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석탄박물관)	2002.11.11.
	운문면 3·18독립운동 기념관	3·1운동	청도군	청도군교육지원청	청도군교육지원청	2002.07.25.
	이육사 문학관	문화운동	안동시	안동시	(사)이육사추모사업회	2004.07.31.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	의병운동	청송군	청송군	청송군	2011.06.02.
국가 수호	다부동 전적기념관	6·25전쟁	칠곡군	칠곡군	한국자유총연맹경북도지부	1981.11.30.
	영천전투호국기념관	6·25전쟁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2019.10.08.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6·25전쟁	칠곡군	칠곡군수	한국자유총연맹경북도지부	1978.07.01.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6·25전쟁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2020.06.05.
	칠곡호국평화기념관	6·25전쟁	칠곡군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2015.10.15.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6·25전쟁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2002.09.01.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6·25전쟁	상주시	상주시	상주시	2018.03.16.

출처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